

*김수원 목사의 판결에 의한 노회장 승계의 허위주장 *

- 총회판결문 주문에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판결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서 각하되고 또 고법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어디에도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을 승계한다는 주문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부터 김수원 목사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때에 노회장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두 번째 청구취지'에 당연히 부노회장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는 판결주문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는 위 주문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김수원 목사가 당연승계한다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판결 주문만 효력이 발생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의 내용만 판결 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에 정직 1년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으면 정직 1년으로 판결 집행을 합니다. 그 판결 이유가 면직될 사유가 또 정직 2년에 처할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주문의 내용만 집행할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계한다는 주문이 없기 때문에 승계한다는 것은 모두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결 이유에 승계라는 단어가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판결 주문에 김수원 목사가 노회장으로 승

계한다는 주문이 없는 이상 이용혁 목사의 주장 등 기타 문건은 모두 거짓말이고 가짜이고 유혹하는 말이고 허위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회장 선거를 그날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면 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재판국

판 결

사건번호 : 예총재판국 사건 제102-09호

사 건 명 : 서울동남노회 태봉교회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김충수 목사, 이대희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선거무효소송)"

원 고 : 김수원 성별 : 남 직분 : 목사(선거당시 서울동남노회 부노회장)
주소 : 경기 광주시 태봉로 1번길 12(태전동) 태봉교회

피 고 : 1.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김충수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여주시 여흥로 140번길 25 세종교회
2. 서울동남노회 선거관리위원장 이대희 성별 : 남 직분 : 목사
주소 : 경기 광주시 퇴촌면 갈을길 40-96 우산교회

변론종결일 : 2018년 3월 13일

판결선고일 : 2018년 3월 13일



주 문

1. 2017. 10. 24.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에서 실시한 노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납된 재판비용은 총회로 귀속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판결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73회 서울동남노회 정기노회 당시 목사 부노회장으로서 노회장 선거(이하 '이